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7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의자 : 김남근 · 곽상언 · 김동아  
김문수 · 김승원 · 김우영  
김윤 · 김현정 · 남인순  
민병덕 · 박정 · 박정현  
박주민 · 박지원 · 박해철  
박홍근 · 박홍배 · 복기왕  
서미화 · 손명수 · 신장식  
염태영 · 이강일 · 이광희  
이용선 · 이용우 · 이재관  
이주희 · 이훈기 · 장경태  
장종태 · 조인철 · 채현일  
한창민 의원(34인)

## 제안이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 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 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 나.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7 신설).
- 다.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8 신설).
- 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 마.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10 신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을 제40조의11로 하고,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침해행위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 · 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문가”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⑥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보고서

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할 사람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인이 정한 자를 의미한다.

##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

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서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40조의6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8(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

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방법 · 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 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신문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상녹화물(녹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제40조의9제1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의11(종전의 제40조의6)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9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0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5. 「민사소송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의6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조의9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은 결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 ·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 ·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1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p> <p>1. 상대방 당사자가 제40조의2 제1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침해행위의 상당한 가능</p>

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  
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

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  
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 ·  
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  
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

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법」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문가’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  
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  
다.

⑥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  
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  
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  
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  
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  
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  
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  
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반  
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  
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  
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  
람등”이라 한다) 할 사람을 정  
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혹  
은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  
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  
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인이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

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2)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13)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 절차 · 기간 · 비용,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

<신 설>

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  
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  
사 중에 제3항에 따라 법률자  
문서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  
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  
우 지정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  
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  
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40조의6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  
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  
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0조의8(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  
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  
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  
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  
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  
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  
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  
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접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접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개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개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신 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  
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  
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  
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  
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  
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  
자문서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방법 · 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  
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  
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  
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신문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상녹화물

(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요

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

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 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

<신 설>

제40조의6(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제40조의9제1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의11(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현행 제40조의6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9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0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

		<u>람</u>
<u>&lt;신 설&gt;</u>		<u>5. 「민사소송법」 제154조의2</u>
제41조(별 칙) ① (생 략)		<u>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u>
<u>&lt;신 설&gt;</u>		제41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u>
		<u>이 제40조의6제5항 후단에 따</u>
		<u>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u>
		<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u>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lt;신 설&gt;</u>		<u>③ 제40조의9제5항에 따라 선</u>
		<u>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u>
		<u>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5년</u>
		<u>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u>
		<u>하의 벌금에 처한다.</u>
<u>&lt;신 설&gt;</u>		<u>④ 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u>
		<u>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u>
		<u>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u>
		<u>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u>
		<u>는 면제할 수 있다.</u>
<u>② · ③ (생 략)</u>		<u>⑤ ·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u>
제43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u>과 같음)</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u>		<u>⑤ 법원은 결정으로 정당한 이</u>
<u>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u>		<u>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을 위</u>
<u>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u>		<u>반하여 조사를 거부 · 방해 또</u>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는 기피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  
만원 이하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법원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